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투자

1.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7)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채택한 후 즉시 미합중국에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7) 및 그 밖의 적용법률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한다.
2. 제11.16조제1항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다음에 대한 청구를 제11장(투자)의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 가. 대한민국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 나. 각 경우에 맞게,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 기업이 그러한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러한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

해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2절이 준용되며, 제1절상의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2절상의 모든 언급은 이 유보가 없었다면 제1절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 내지 마호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3. 제1항상의 조치가 제13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인 경우 이 유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8380호, 2007.4.1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9826호, 2007.1.5)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21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1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기재는 제13.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는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관련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이 있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상의 대한민국의 약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은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는 대한민국법이 허용하는 특급배달서비스의 제공에 영향

을 미치는 조치로서 제11.3조 또는 제12.2조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조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문단은 대한민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기재는 제13.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증권거래법 제203조(법률 제8315호, 2007.3.29)

2007.5.25일자 공개본

분 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인토지법상 외국회사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회사에 의한 토지 취득은 허용된다.

나. 다음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외국인토지법상 외국회사로 간주되는 회사 또는 외국회사의 지점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

-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토지법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법률 제7297호, 2004.12.31)

농지법 제6조 (법률 제8170호, 2007.1.3)

분 야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사용·판매·보관·운반·수입·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국가의 재산권적 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 행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조치는 장래에 설치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에도 적용된다.

이 유보는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범위 내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u>

대한민국은 GATS상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and GATS/SC/48/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의 목적으로만, 대한민국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1. “모든분야”로 기술된 유보는 제외하고, 대한민국 부속서 I상의 유보 중 관련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공급형태 1, 2,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
2. “모든분야”로 기술된 유보는 제외하고, 대한민국 부속서 I상의 유보 중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3. 부록 II-가-1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상기 대한민국 양허표는 부록 II-가-1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 제2항 바호 관련 제한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None”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제12.6조(비합치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12.5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발효되었거나 체결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당해 협정 당사국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 발효되거나 체결되는 다음의 분야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당해 협정 당사국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의 보장 또는 편방향 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국제 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분 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 발효되거나 체결되는 철도운송 분야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당해 협정 당사국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007.5.25일자 동계협정

분 야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분야란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는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 포함),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에너지 서비스 - 핵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판매, 전력 사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발전·송전·배전 및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상의 에너지서비스(전력) 유보와 불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제11.8조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분 야 에너지 서비스 - 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상의 에너지 서비스(가스산업) 유보와 불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분 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중개업, 도매업(수입업포함), 소매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운송 서비스 - 육상여객운송 서비스 (택시 및 정기여객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택시 및 정기여객 육상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운송 서비스 - 육상운송 서비스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육상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화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육상운송(국내운송 제외)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육상운송서비스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육상화물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운송 서비스 -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최혜국 대우 (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쌀의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007.5.25일자 공개본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병역의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는 우체국에서 지원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의 정수를 결정할 때와 우체국에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기존의조치 우편법 (법률 제8288호, 2007.1.26)

병역법 (법률 제8243호, 2007.1.19)

공용차량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9414호, 2006.3.29)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다음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매체간 교차소유 제한

나.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의제외국인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최소 비율 설정. 다만, 이 호는 종합편성·보도 또는 홈쇼핑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사의 국적 또는 거주요건

라. 플랫폼사업자(예컨대,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또는 공익채널의 송출 의무 부과

마.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비율을 국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의무 부과. 다만, 그러한 조치는 미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현행 시장접근을 중대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¹⁾

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거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비율을 국내 신규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의무 부과. 다만, 이

1) 투명성 목적상, 방송법(법률 제8301호, 2007. 1. 26)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연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일정비율을 국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편성토록 정할 수 있다. 2007. 4. 30일 현재, KBS, MBC, SBS의 연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및 EBS의 연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이 국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되어 있다.

- 경우 방송프로그램 공급업자에게 부속서 I에 규정된 수준보다 더 많은 외국 콘텐츠 편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 바. 외주제작 프로그램 쿼터, 국내물에 대한 제작비 쿼터 또는 주시청시간대 쿼터의 부과. 다만, 이러한 조치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할 경우, 부속서 I에 규정된 수준보다 더 많은 외국 콘텐츠 편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 사.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대한민국 콘텐츠 보유 의무의 부과. 다만,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수요가 미미한 비디오의 보유로 귀결되어서는 아니된다.
- 아. 특정 분야의 외국방송서비스(외국의 케이블 채널을 포함한다)의 재송신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다만, 이러한 조치는 동일한 분야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부속서 I에서 부과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 제한조치가 철폐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호는 이 협정 서명일 이전에 승인된 외국 재송신 방송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급자는 방송법(법률 제8301호, 2007.1.26 및 결정 제2005-18-144호, 2005.4.26)에 따라 자신의 서비스를 계속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의 목적상,

- 가. 의제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나. 외주제작 프로그램이라 함은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제작사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 다. 주시청시간대 쿼터라 함은 일정 비율의 대한민국 콘텐츠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제공하도록 하는 요건을 말한다.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제2항을 조건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고려하거나 방송 및 통신 분야의 미래 규제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 가. 외국인 지분 제한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치도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분류에 대한 국내 정책 결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부속서 I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통신서비스 유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조치 또는 부속서 I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유보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조치 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조치에는 제11.12조제1항 다목이 적용된다. 그리고,
 - 나. 국내 콘텐츠 쿼터를 부과하는 어떠한 조치도 부속서 I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유보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허용된 비율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조치에는 제11.12조제1항 다목이 적용된다.

투명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다음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체계를 개혁할 예정이다.

- 가. 규제기구개편 및 새로운 법적 체계 구축
- 나. 산업분류시스템 검토

- 다. 사업자 허가 및 승인
- 라. 소유 및 교차소유 시스템
- 마. 사업행위에 대한 규제
- 바. 기술 규제 개선
- 사. 보편적 서비스 실현, 그리고
- 아. 융합 시대에 있어서의 공익 프로그램에 관한 이슈 검토

이 유보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라함은 당해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되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는 이 협정의 부속서 I상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유보와 부속서 II상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에서 행한 약속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지 아니한다.

분 야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공급·관리·매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조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는 제13장(금융서비스)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행의 정당한 투자은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 야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의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할 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에 관한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 소비자를 겨냥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를 통한 대한민국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상황을 다루는 조치는 제21장(투명성)과 제12.8조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유보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타입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및 기타 비디오 다운로드,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와 부속서 II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 서비스 유보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및 지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지적측량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007.5.25일자 공개본

분 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등급판정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에는 공식적인 검사 또는 테스트를 받기 전에 생산자를 대신하여 실시되는 검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7.5.25일자 농축산물

분 야 사업서비스 - 농업·수렵·임업·어업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 유전적개량, 인공수정, 버보리 도정업, 미곡 종합처리장과 같은 농업, 임업 및 축산업관련 부수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농협·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과 관련한 부수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007.5.25일자 공개본

분 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 포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007.5.25일자 공개문

분 야 교육서비스 - 유아·초등·중등·고등 및 기타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유·초·중등교육, 의료·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초·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 교육 제외), 그리고 기타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는 해외용도를 위한 교육 테스트의 운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국내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 테스트를 선택·적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분 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의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이 유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369호, 2007.4.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372호, 2007.4.11)에 의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설치에 관련된 특례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원격 의료서비스 관련 특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레크리에이션 문화·스포츠서비스 - 영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레크리에이션 문화·스포츠서비스 - 박물관 및 기타 문화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007.5.25일자 공개본

분 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자격 부여·승인·등록·허용·감독 및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나.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사·법무회사(로펌)·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와 동업·상사연합·제휴 또는 법적 형태를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다.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까지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합중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

제공법에 관하여 “외국법자문사”로서 대한민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사무소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변호사를 구성원 및/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의 목적상,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라 함은 미합중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미합중국 내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고용 제한
 - 나. 외국 공인회계사의 대한민국 내 감사 서비스 제공 제한
 - 다.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 불구하고,
 - 가. 이 협정 발효일까지,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미합중국 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미합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미합중국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 나.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대한민국은 미합중국법에 따라 등록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최소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공인회계사 1인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

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의 목적상, 미합중국 회계법인이라 함은 미합중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미합중국에 있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2007.5.25일자 공개본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대한민국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고용 제한
 - 나. 외국 세무사의 대한민국 내 세무조정 또는 세무대리 서비스 제공 제한
 - 다.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 불구하고,
 - 가. 이 협정 발효일까지,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미합중국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미합중국 법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미합중국 또는 국제 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미합중국 세무사가 대한민국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 나.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대한민국은 미합중국 세무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 세무사가 대한민국 세무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최소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세무사 1인은 대한민국 세무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

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의 목적상, 미합중국 세무법인이라 함은 미합중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미합중국에 있는 세무법인을 말한다.

2007.5.25일자 공개본

분 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허가 신청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관련 조치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양 당사국은 이 개정 과정이 끝난 이후, 이러한 개정에 비추어 이 유보의 수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이다.

기존의 조치 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7946호, 2006.4.28)
원자력법(법률 제7806호, 2005.12.30)
대외무역법(법률 제8356호, 2007.4.11)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3호(2007.4.1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1호(2007.4.12)
관세법(법률 제8136호, 2006.12.30)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제12.1조제6항(적용범위)에서 정의된 대로, 예를 들어 법집행, 교정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공급을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 투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는 대한민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가 제13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서비스와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이행요건(제11.8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운송 및 대한민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연안해상운송은 대한민국선박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모든 항구간 해상운송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선박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한 단체가 소유한 선박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라.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기업이 소유한 선박.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부록 II-가-1

주 : 당사국간의 상호검증을 조건으로 한 초안	
분야/ 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연구개발 서비스 :</p> <p>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p> <p>나. 사회과학 및 인류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p> <p>다. 서로 다른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하여 "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Unbound"에서 "None"으로 수정</p> <p>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하여 "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Unbound"에서 "None"으로 수정
광업 관련 부수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Unbound"에서 "None"으로 수정
포장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Unbound"에서 "None"으로 수정
컨벤션 대리 서비스 이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3에 대하여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주 : 당사국간의 상호검증을 조건으로 한 초안

분야/ 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관광사업 및 여행관련 서비스:</p> <p>가. 여흥이 없는 음료제공 서비스</p> <p>철도 및 항공운송과 관련한 여흥이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p> <p>나. 관광 경영자 서비스</p> <p>다. 관광객 안내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3에 대하여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3에 대하여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None"으로 수정</p>